

제안서 평가 서면질의 답변서

삼척시 공고 삼척시 공고 제2023-2006호 「광산근로자 복지센터(수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1) > 경영상태 자본금을 잔액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답변 > 잔액증명서로 대체 불가합니다. 정기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단,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경영 상태를 평가 합니다.

※ 제안서 작성 지침서 16p(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및 33p<서식 제12호> 참조

질문 2) > 수영장 인건비를 한도내에서 대체 가능한지?

답변 > 인력 기준 13명을 유지하고 「근로기준법」를 준수하여 위탁비 범위내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영장 운영 적자 발생시 수탁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안서 작성 지침서」 1p 참조

질문 3) > 프로그램 개발 수익으로 수영강사의 별도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수익 창출은 불가합니다.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별표 2]의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영장의 이용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수영장의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합니다.

질문 4 > 인력기준 13명(총괄 관리 1명, 시설관리 1명, 수영강사 4명, 안전요원 4명, 대표 1명, 환경미화 2명)안에서 직책 간의 겸직을 통해 절약된 인건비를 다른 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합니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체육지도사의 배치는 ‘운동의 지도가 필요한 자가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맞게 상시로 배치해야합니다. [문체부 민원 응답 내용]
- 나. 수영장업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에 의거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수상안전 요원 또한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체육지도자(수영강사)가 수상안전요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다. 또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수영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적정인력 13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력 고용 창출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직책 간의 겸직은 불가 합니다.

질문 5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인수인계 기간이 1개월 이상 가능한지?

답변 >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이상 부여는 불가합니다. 위탁기간인 2024. 1. 1.부터 시설 관리·운영을 해야합니다.

**<기타사항> 본 질의접수 기간(2023. 12. 6. 09:00 ~ 18:00) 이후의 질의는
답변이 불가하며, 유선 질의는 불가합니다.(효력없음)**